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118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1. 30.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3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8. 1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0. 4. 6. 접수 제75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34,940,630원 및 그 중 18,246,870원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금전채권을 보유한 확정판결부채권자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516213, 판결선고일 2017. 5. 26., 판결확정일 2017. 6. 27.).

나. C은 D의 상속인이다.

D은 2019. 8. 19. 사망하였다. D의 상속인으로 E(처), 피고 B, 망 F의 대습상속인들, 망 G의 대습상속인들, C, H이 있었다. E는 D의 사망 이후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 B, 망 F의 대습상속인들, 망 G의 대습상속인들, C, H은 각 $1/5 (= 7/35)$ 의 비율로 D을 상속하였다.

다.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2020. 4. 6. 피고 앞으로 2019. 8. 19.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0. 4. 6. 접수 제7529호)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앞서 본 1. 가.항 기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이전에 발생하여 존재하던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1)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C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먼저 피고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2. 28. 및 29. C의 자녀인 I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한 것에 불과하고 그 돈을 채무자인 C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이로써 C에게 협의분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매각뿐만 아니라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같은 실질을 가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달리 위 금전의 지급이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에 해당하는 매각 등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7/35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물반환).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은 미국 유학 이후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으며 그 생사조차 알 수 없고, 피고의 부모님이 형제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종가이니 종손인 피고가 소유해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하여 추후 형제들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여 준 것이므로 그는 선의의 수익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디모데

별지